

Tax News Flash

- Transfer Pricing & Customs

November 18, 2024

삼성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 이전가격

이전 가격에서의 인공지능(AI) 적용, 그 가능성과 위험성

KPMG 의 Thomas Herr 는 AI 가 미국 국세청(IRS)의 세수 부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023 년 7 월 기준으로 IRS 의 LB&I(Large Business and International Division) 사업부에서 이전 가격 업무에 대한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AI 가 제안되었습니다.

- 이전 가격 부문은 기존과 달리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AI는 다양한 데이터를 조합하여 세무 및 이전 가격 조사에서 세무 당국의 리소스를 최적화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 세무 당국은 법인세, 이전 가격 신고 자료 및 기타 세무 데이터와 같은 방대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이전 가격 감사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규정 준수를 강화하며, 분쟁 해결 과정을 개선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별 사례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 기반의

시나리오 분석을 제공하며, 과거 사례 분석을 통해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AI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이전 가격 담당자가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모든 혁신적 기술과 마찬가지로 AI는 기회와 위험을 동반하지만, 이전 가격 업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향후 납세자는 AI를 활용하여 자신의 데이터를 더 잘 이해하고, 세무 당국이 AI의 도움으로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OECD :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를 위한 조세 보고서 발표

OECD는 2024년 7월 이후 국제조세 개혁의 최근 동향을 요약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 이 보고서는 디지털 경제의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라 2 솔루션(Two-Pillar Solution)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천지국 과세규칙((Subject To Tax Rule, 이하 "STTR")은 특정 소득이 최소 세율인 9% 미만의 명목세율이 적용되고 해당 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권이 조약을 통해 양도된 경우, 관할국이 추가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TTR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글로벌 최저한세 보장을 위한 규칙 패키지의 일부를 구성하며, 다른 규칙을 보완하고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 또한, BEPS 최소 기준 이행과 세금투명성 뿐만 아니라 조세정책과 조세 불평등 그리고 조세 행정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 이 보고서는 2024년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브리질 G20 의장국 하에 개최된 제4차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앞두고 OECD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02 국제조세

최신예규/판례: 조심 2024 중 2639 (2024.09.11)

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 93 조 제 8 호는 특허권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지를 국내로 의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1) 처분개요 및 주요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미국법인으로 다수의 특허권을 취득 및 보유하면서 이를 라이선싱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내국법인인 a 주식회사(이하 "a")와 사이에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Patent, 이하 "쟁점특허권")의 사용을 위한 라이선스(License) 계약을 체결함
- a는 쟁점특허권의 사용료로 000달러(000원, 이하 "쟁점소득")를 지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제한세율 15%을 적용하여 000원을 원천징수분 법인세로 신고·납부함
- 청구법인은 쟁점소득이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소득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a가 신고·납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환급 결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함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함

2) 쟁점

-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 주장
<p>1. 한미 조세조약의 해석상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 기준에 따라 내국법인이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내의 재산에 대한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함 - 대법원은 1992.5.12. 선고, 91누6887 판결에서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14조 제4항에서의 '특허권 등에 대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는 규정의 의미는 어느 것이나 외국법인 혹은 미국법인이 대한민국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한다"라는 법리를 판시하였으며, 이후에도 동일한 법리를 거듭 판시해왔음 - 따라서 한미 조세조약의 해석상,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한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하며, 이 	<p>1. 과세권의 발생에 관한 사항은 일차적으로 각국의 세법에 의하여 규율 되는 것이고, 조세조약이 국내 세법과 달리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과세권의 소재를 정하는 바, 한미 조세조약에서는 "사용기준"만을 규정하고 있고, "사용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지에 대한 판단은 한미 조세조약 제 2 조 제 2 항 제 1 문에 따라 국내 세법의 기준에 따라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 전 「법인세법」은 특허권 등의 사용료와 관련하여, 조세조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규정하는 경우, 국외에서 사용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 지급되었더라도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그러나 개정 후에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 등록되었더라도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국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쟁점소득은 특허권이 국내에 미등록된 경우에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쟁점 특허권의 국내 미등록을 이유로 해당 사용료가 국내원천소

<p>와 관련하여 더 이상 해석상의 논란의 여지가 없음</p>	<p>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p>
<p>2. 대법원은 한미 조세조약을 「법인세법」보다 우선 적용하여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판단하였는바, 「법인세법」의 개정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 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조세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그 내용상 일반법인 「법인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에 해당함.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도 「법인세법」상 규정보다 한미 조세조약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사용료소득의 원천지국을 판단함. - 대법원은 「법인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를 한미 조세조약 해석에 따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지 않는 기존 법리를 유지하고 있음. 이는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 소득여부는 「법인세법」 개정이 아닌, 한미 조세조약의 개정에 의해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임 	<p>2. OECD 모델 조세조약 주석서 제 12 조 8 문단에 따르면, “사용료는 공인등록기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의 사용 또는 사용 권리에 대한 지급금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독일 연방소득세법 제 49 조 또한 해외에 소재한 권리라도 그 권리가 독일 내 고정설비에 사용된다면 그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하여, 독일판례(BFH, 1973.5.23. IR 163/71) 및 후속 판례들에서도 권리의 소재지가 아닌 해당 권리가 자국 내 고정시설에서 사용되는지 여부가 국내원천소득 판정 기준이 됨. 이런 관련 사례를 고려할 때, 쟁점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음</p>

4) 판단

-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은 “특허 등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한 사용료는 해당 재산이 사용되는 체약국 내에서만 원천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조항은 원천지 판단기준으로 ‘사용지 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용지’의 개념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법을 따르는 것이 타당함. 특히,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사용될 경우 국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지를 국내로 간주하는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주요 통상 이슈

출처: KPMG ERI (경제연구소)

1. USMCA 재협상 전망

- USMCA 체결 이후, 중국의 대미 수출 비중은 감소한 반면 멕시코의 대미 수출 비중은 크게 증가하였음. (멕시코의 대미 수출 비중은 '20년 2분기 9.52%에서 '24년 2분기 13.82%로 증가하였으며, 중국의 대미 수출 비중은 동기간 18.67%에서 10.97%로 감소하였음)
- 미국은 2026년 USMCA 개정을 앞두고 업계 의견을 수렴 중 (USMCA는 유효기간을 16년으로 정하고, 6년마다 협정 내용을 재검토해 협정 갱신여부를 결정함)
- 트럼프 정부 재집권 이후에, 중국의 우회 수출통로로 비판받고 있는 USMCA에 대한 재협상이 예상되고 있음.

2. 한-미 FTA 재개정 가능성

- 트럼프 1기 행정부는 '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한 차례 개정한 이력이 존재함. 당시 21년도 종료 예정이던 한국산 화물자동차의 관세를 '40년까지 유지하기로 기한을 연장하였음.
- 트럼프 당선자는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한국의 자동차를 지목한 상황. (유세과정에서 바이든의 전기차 정책 폐기 공약을 내세우며, 바이든 정부의 1조 달러 가까운 적자의 주요 원인은 유럽, 일본, 멕시코, 캐나다, 한국에서 수입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라고 언급)
- 따라서 트럼프 정부 재집권 이후 한-미 FTA 재개정 가능성이 존재함.

3. 반도체 지원법 축소 우려

- 반도체 보호무역주의 및 대중국 규제 강도 및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 중국산 수입품에 60% 이상 관세 부과를 언급하고 있어 반도체 관련 더욱 강도 높은 보호무역주의를 보일 전망)

- 반도체 지원법 조항 일부 수정 또는 직간접적인 지원규모 축소 전망됨
 - 중국산 수입품에 60% 이상의 관세부과 언급 ('24년 02월)
 - 반도체 장비 외 관련 서비스, 부품에 대한 대중국 규제 확대 ('24년 03월)
 - 저사항 AI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 확대 ('23년 12월)
 - 첨단 반도체 장비 대중국 판매 제한 ('22년 10월)
 - 슈퍼컴퓨터용 첨단 반도체 대중국 수출 제한 ('22년 12월)

4.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액공제 혜택 축소

- 미국 주도 자동차 및 이차전지 시장 재편을 위해, 관세 인상 및 온소어링 친화 정책을 펼침과 동시에 바이든 정부의 IRA 일부 내용을 무력화할 방침 (보편적 무역관세, 완성차 및 부품 생산 온소어링, 전기차 세액공제 축소 (폐지), 내연기관차 탄소 배출량 감축정책 폐지 등이 주요 공약)

Key Contacts

삼성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이영호 상무

T. 02-2112-6763



김태주 전무(관세)

T. 02-2112-7448



오영빈 상무(관세)

T. 02-2112-0435

home.kpmg/socialmedia



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4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